

1. 제정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안 제4조)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수송사업의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나.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안 제5조)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 탐사실적의 내용(안 제9조)

탐사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탐사실적에는 탐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시추공의 개수 및 위치,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탐사저장량,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 등이 포함되어야 함

라.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안 제13조)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영 제29조의 사업 승계 신고 규정을 준용하여 30일 이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등) 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8조제8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수송사업의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려는 수송관설치운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에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안전검사의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

제9조(탐사실적의 내용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탐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시추공의 개수 및 위치(시추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도출된 저장후보지 위치 및 탐사저장량
4. 탐사 및 시추 관련 지질학적 데이터
5. 저장 가능성 평가
6. 환경 영향 평가
7. 기술적 타당성 평가

②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 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18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 기간 연장인가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

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2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증”이란 별지 제15호서식을 말한다.

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망한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을 말한다.

제15조(저장사업 휴업·폐업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을 말한다.

제16조(저장사업 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제19조(정기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37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37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을 말한다.

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제21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5호서식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	-	-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법 제19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3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	-	-
2.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법 제27조에 따른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신고서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부내용	포집 방법	위치	
	포집 규모	면적	
	포집 형태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신고 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포집시설 위치·면적		
	포집시설 용량·포집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
이
이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설치·운영계획서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 신고** **증명서**
[] 변경신고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주소:

포집시설 위치

포집시설 면적

포집시설 용량

포집방식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개요	사업에 사용할 수송수단 [] 수송관 [] 차량 [] 선박 [] 철도 ※ 사용할 수송수단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 √ 표를 합니다.	
	해상화물운송사업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사업개시예정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송수단별 시설 확보 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서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주소:	(전화번호:)
4. 사업 범위:	
5. 사업장 소재지:	
6. 사업시작(개시)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	-----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구분	성명	자격	자격증번호	선임(예정) 연월일	취업동의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원					
	안전 관리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안전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세부내용	수송관 위치	시점	
		종점	
	검사 희망 연월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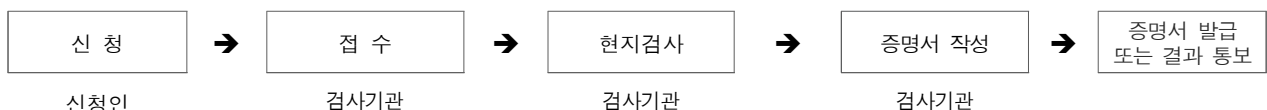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1부 2. 수시검사명령서(수시검사명령을 받고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안전검사증

1. 상 호(명칭):
2. 사무장 소재지:
3. 대표자:
4. 검사원 성명:
5. 검사 연월일:
6. 다음 검사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주소:

담당 부서: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당초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	
	연장신청 사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1부 2.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탐사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탐사에정구역		
탐사의 방법		
탐사기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탐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탐사에정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구역도(평면·단면 도면을 말합니다) 1부 2. 탐사계획서 1부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1부 4. 탐사에정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조사 계획서 1부 5.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6. 탐사에정구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탐사승인서			
탐사권자	상호(명 칭)		
	대표자 성명		
	주소		
탐사방법		면적	km ²
탐사권의 존속기간	. . . 부터 . . . 까지 년간		
탐사권 설정 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		
	①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②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③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④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⑤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⑥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⑦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⑧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⑨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⑩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⑪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⑫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⑬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⑭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⑮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⑯ 북위	과	동경 의 교점
허가조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탐사권자)	상호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시	위치	
	등록번호	제 호
	면적	km ²
탐사권 취득 연월일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기간	. . . ~ . . .	
연장 사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탐사실적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		
탐사권자	상호 (명칭)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탐사권의 표시	위치	
	등록번호	제 호
	면적 km ²	
탐사권 취득연월일		
처음 탐사실적 제출기간 . . . ~ . . .		
탐사실적 제출 연장기간 . . . ~ . .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세부 내용	저장소 위치	저장소 폐쇄 명령 연월일
	원상복구 기간	
	원상복구 범위	
	☐ 주입구 폐쇄 ☐ 공작물 등의 수거 ☐ 기타 조치()	
※ 해당하는 모든 곳에 √ 표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복구 완료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원상복구 완료 보고서 1부(「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저장사업 허가증

1. 사업의 범위:
2. 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5. 대표자 생년월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담당자(인)

저장소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저장사업의 내용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사 업 범 위	
	저장소 소재지		
	저장소 사용개시일		
	저장소 사용기간		
	저장소 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지위승계 원인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계	
	지위승계 연월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증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저장사업 개시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허가사항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개시 연월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저장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저장사업

[] 휴업

[] 폐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허가 번호			
	허가 연월일			
	[] 휴업 [] 폐업 연월일	년 월 일	재개업 예정 (휴업인 경우) 연월일	년 월 일
	[] 휴업 [] 폐업 사 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저장사업을 []휴업·[]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1부 4. 휴업 또는 폐업 시 저장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저장소가 운영 중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저장사업 허가증(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 내용	대상지 위치	대상지 면적
	모니터링 책임자	
	모니터링 기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서 1부 1. 모니터링 구역(명칭, 위치, 면적) 2. 모니터링 기간 3. 모니터링 방법 4.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누출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5. 저장소 내 압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6. 저장여건의 변화와 예측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세부내용	저장소 현 황	명칭
		위치
	운영 중단 기간	
	사 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시 중단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일시 중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한 경우에는 누출통보 내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제 호

[] 최초
정기검사([] 계속)증명서
[] 변경

1. 상 호:
2. 사업장 소재지:
3. 대표자:
4. 저장소 소재지:
5. 검사원 성명:
6. 검사 연월일:
7. 다음 검사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저장소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주소:

담당 부서: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시·도지사	시·도 명칭	시·도지사 성명
	주 소(시·도청사)	
	전 화(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신청내용	집적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신청단지면적 m ²	산업단지면적 m ²
	주요 입주업종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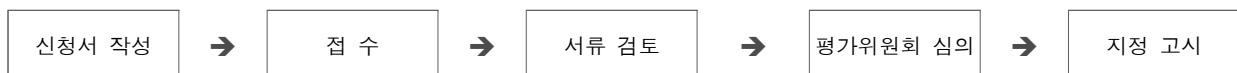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인터넷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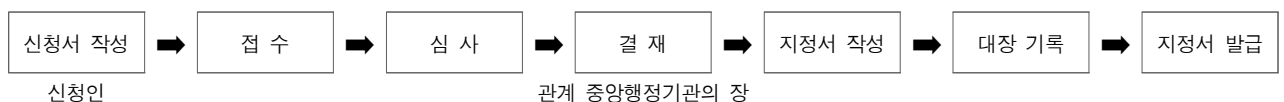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